

## 20. 투자가용재원 산출방법 개선방안<sup>2)</sup>

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

### □ 개선안의 주요 내용

○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순계를 기준으로 합계도 작성

-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기지방제정을 계획하는 경우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별 분류가 필요

- 다만, 전 자치단체의 합계를 구하는 경우에는 순계기준의 합계만 활용 가능

○ 지방채,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일반재원인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(조정교부금 포함), 제정보전금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로만 일반세입을 구성

※ 지방채와 국고보조금은 일반세입에서 제외되고 부족재원으로 분류

### 〈 지방채 및 국고보조금 제외 사유 〉

#### ① 지방채

지방채는 부채이므로 가용세입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족재원으로 분류함으로써 지방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

#### ② 국고보조금

국고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지방비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(일반)투자가용재원(일반세입-경직성경비)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제외함

경직성 경비에 경상비와 의무적경비를 포함(세부내역 표 참조)하고 또한 예비비의 경우도 총액의 1%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적 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

2) 개선방안은 개인의견이며, 행정자치부의 공식의견이 아님